

# 검 토 보 고 서

1.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

민원여권과

2.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

전산정보과

( 2011. 10. 1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 **1. 안 건 명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9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2011년 10월 4일

# **4. 근거법령**

가. 국가정보화 기본법

나. 전자정부법

## <검토보고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정보화 환경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여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정책의 수립,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, 「정보격차 해소에 관한법률」, 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을 통합하여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으로 2009. 8.23일 통·폐합되고,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이 「전자정부법」으로 2010. 5. 5일 통·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

## <개요>

- 동 조례안은 전문 제7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,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제3장에서는 정보화 분야별 추진 사항, 제4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, 제5장에서는 정보화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, 제6장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, 제7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,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,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## < 주요내용 >

- (1) 조례안 제명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」로 변경
- (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안」의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로 통합
- (3)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,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
- (4) 안 제7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제11조(정보화책임관)에 의한 정보화책임관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
- (5)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도록 함
- (6) 안 제12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
- (7) 안 제24조에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보시스템 관리,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

- (8) 안 제26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, 교육,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- (9) 안 제28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
- (10) 안 제3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법, 쓰레기투기방지, 주차 관리, 교통정보수집, 불법주정차단속, 재난, 재해예방, 시설물 관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,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- (11) 안 제32조에서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하도록 규정
- (12) 안 제36조 및 안 제37조에서는 공무원과 구민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(13) 안 제39조에서는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안 별표 3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함
- (14) 안 제42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7개 항목을 나열하여 규정

- (15) 안 제47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를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(16) 안 제49조에서는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(17) 부칙 안 제2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고,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 당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협의회”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는 안 제47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보도록 함

## [검토의견]

- 정보화 관련 법률을 통·폐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」에 맞추어 우리 구의 정보화를 효율적,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,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